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38
----------	------

제출년월일 : 2006. 2.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최근 도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 및 주민편의를 위한 쾌적한 보행권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한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민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기본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라.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대한 구성·기능·직무 및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내지 제15조).

제 정 조 레 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보행자의 보행권확보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조례 제정 추진 요청 : 경기도청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녹색교통도시”라 함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협력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4.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사업)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로기능상 인도 및 차도폭이 과대·과소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정·정비사업 및 교통구조 개선사업 등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
3.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을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
4.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 1회 이상 점검·정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제8조(재원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산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관계공무원
 - 2. 안산시의회 의원
 -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 5.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2.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4.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본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는 활동에 관한 사항

제11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고 해촉 할 수 있다.

- 1. 질병 및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설과장 이 강석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로시설담당 이승인
	담당자 성명·전화	차운회 (행정 2432)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38
----------	------

제안년월일 : 2006. 2. 16.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 수정이유

-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보행환경 개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 중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를 추가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안 제8조)
- “보행환경 전문가”를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로 수정함.
(안 제9제4항제3호)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중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

제13조 본문 중 “임기 중이라고”를 “임기 중에도”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8조(재원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공무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u>보행환경 분야 전문가</u>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생략) <p>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종이라고 해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p>제8조(재원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 ----- 1. ----- 2. ----- 3. <u>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u> 4. ----- ----- 5. ----- ----- ⑤ (원안과 같음) <p>제13조(위원의 해촉) ----- ----- <u>임기 종에도</u>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원안과 같음)